#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핫이슈 보고서

2019년 12월





# 미국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National 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9) 발의 내용 및 배경 분석

# < 목 차 >

- 1. 개요 및 배경
- 2. 주요 내용 분석
  - (1) 해당 기술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2) 기타 기술기업들을 위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3) 법률의 집행
- 3.관련 기업의 시례와 동향
  - (1) 개요
  - (2) TikTok
  - (3) Apple
- 4. 시시점

# 1. 개요 및 배경

- ▶ 미 공화당의 Josh Hawley 상원의원이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법(<u>National Security adn</u>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법안을 발의('19.11.18)
  - Hawley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등 일부 요주의 국가(countries of concern)에 미국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1
  - 이 법안은 중국과 주요 기술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온 미 상원 법사위원회 범죄 및 테러 소위원회(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on Crime and Terrorism)의 청문회에 이어 공개

 $<sup>1\ \</sup>underline{\text{https://www.hawley.senate.gov/senator-hawley-introduces-bill-address-national-security-concerns-raised-big-techs-partnerships}$ 



- Hawley 상원의원은 동 소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영상 앱 TikTok과 중국 정부의 유착 관계로 인해 이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공유되는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
-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Apple iCloud<sup>2</sup>의 암호화 키를 중국에 저장하기로 한 Apple의 결정 역시 문제가 된다고 지적
- Hawley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현행 법률 하에서는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국가의 정부가 미국 시민의 민감한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엄격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
- ▶ 동 법안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기술기업과 요주의 국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
  - 동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술 기업(covered technology company)은 웹 사이트 또는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온라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지칭
  - 요주의 국가(countries of concern)로는 △중국 △러시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국무 장관이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한 기타 국가로 정의
  - 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 하는 동시에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을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 요주의 국가에 대한 지정은 동 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국무장관은 연간 단위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요건 현황을 검토하도록 규정

#### 2. 주요 내용 분석

- (1) 해당 기술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 기업들은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 법안에 명시된 국가 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데이터 전송 금지
  - 첫째, 최소 데이터 수집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의 웹 사이트·서비스·앱 운영에 필요한 것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금지
  - 둘째, 웹 사이트·서비스·앱 운영에 필요한 본래 수집 목적 이외의 2차적인 데이터 이용 금지
  - 예컨대 △표적 광고 △제휴업체와의 공유 △안면인식 기술 향상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목적으로 간주
- 2 Apple 기기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저장한 사진·문서·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



- 셋째, 해당 기업들은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삭제권 보장을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데이터가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
- 넷째,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거나 해당 정보의 복호화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요주의 국가에 전송 금지
- 이 때 데이터 전송은 요주의 국가로 직접 전송되는 경우는 물론 요주의 대상이 아닌 제3자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적용
- 다섯째, 데이터 저장 시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로부터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나 해당 데이터의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미국 이외 국가에 설치된 서버 또는 기타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 금지
- 단, 합법적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과 데이터 공유에 합의한 국가는 예외
- 여섯째, 최고경영자 또는 회사 내에서 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임원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미 연방통상위원회(FCC), 미 연방 법무장관과 주 법무장관에 이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확인 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 인정
  - 요주의 국가와 연계되지 않은 법 집행기관이나 군 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수집·이용·보유·저장·공유하는 경우에는 위의 <첫째>부터 <넷째> 요구사항까지 예외 인정
  - 정보주체가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해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사용자 데이터) 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상대편이 해당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위의 <다섯째>부터 <여섯째> 요구사항까지 예외 인정
  -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 된 내용, 이메일, 각종 거래를 위한 데이터 등은 예외에 포함
- (2) 기타 기술기업들을 위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 ▶ 웹 사이트나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 법률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 적용
  - 첫째, 미국 내에서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의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요주의 대상 국가로 전송 금지
  - 둘째,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로부터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나 해당 데이터의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미국 이외 국가에 설치된 서버 또는 기타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저장 금지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 인정
  - 요주의 국가와 연계되지 않은 법 집행기관이나 군 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수집·이용·보유·저장·공유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정보주체가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해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사용자 데이터) 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상대편이 해당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위의 <다섯째>부터 <여섯째> 요구사항까지 예외 인정
  -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 된 내용, 이메일, 각종 거래를 위한 데이터 등 예외에 포함

## (3) 법률의 집행

- ▶ 동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 가능
  - 기술기업이 위에 제시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는 불공정 행위 및 기만 행위에 해당되며, 위의 요구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연방법전 제18조에 따른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모두 적용 가능
  - 주(州) 법무장관은 해당 사안으로 인해 주민의 이익이 침해당했거나 위협받았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소 가능
  - 동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술 기업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관할 법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3. 관련 기업의 사례와 동향

# (1) 개요

- ▶ 미 언론과 분석가들은 동 법안이 요주의 국가의 영토 내에 위치한 서버에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ikTok과 Apple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sup>3</sup>
  - Tiktok은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에 있는 본사에 이전하여 전송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
  - TikTok은 중국 베이징 소재 ByteDance Technology가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 이외의 전세계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앱으로 평가

<sup>3</sup> https://www.cnbc.com/2019/11/18/tiktok-pivots-to-new-countries-as-us-scrutiny-increases.html



- 미 FTC는 2019년 2월 TikTok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57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에 따라 중국 현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Apple은 여전히 암호화 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Hawley 상원의원은 이러한 Apple의 관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
-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는 중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
- 따라서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국 사용자들의 데이터이지만, 중국 현지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데이터 저장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 제기

#### (2) TikTok

- ▶ TikTok은 데이터 저장 관행 및 콘텐츠 검열 문제 등으로 인해 미 정부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내 서버로 전송한 혐의로 미 캘리포니아에서 피소⁴
  - 2019년 11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은 TikTok이 사적이고 식별 가능한 사용자 데이터를 방대한 규모로 중국 내 서버에 전송해왔다고 주장
  - 원고는 2019년 3월 혹은 4월에 TikTok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계정은 만들지 않은 상태였으나, 수개월 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TikTok이 계정을 만들고 동영상에서 수집한 생체정보를 포함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문서를 생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
  - 또한 TikTok은 2019년 4월에 원고가 사용하는 기기 및 방문한 웹 사이트 정보 등 사용자데이터를 중국에 위치한 2개의 서버(bugly.qq.com와 umeng.com)로 전송했다고 주장
  - 원고 측은 이 소송을 통해, TikTok 앱에 내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Baidu의 소스코드가 사용자의 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중국 광고 서비스 Igexin의 소스코드와 동일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
  - TikTok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싱가포르에 백업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 ▶ 미 정부의 규제 행보를 의식한 TikTok의 운영사 ByteDance Technology는 TikTok을 중국 내 비즈니스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

<sup>4</sup>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iktok-lawsuit/tiktok-accused-in-california-lawsuit-of-sending-user-data-to-china-idUSKBN1Y708Q



- 미국의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가 미국 앱 Musical.ly에 대한 검토에 나서면서, TikTok의 데이터 수집 관행으로 인한 위험 요인들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
- Hawley 상원의원도 법안 발의와 관련한 성명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TikTok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 공산당이 자녀의 위치, 모습, 음성을 파악하고 현재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TikTok은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
- ByteDance의 Zhang Yiming CEO는 내부 직원용 메모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호 관행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공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sup>5</sup>
- Zhu CEO는 미 언론사 The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TikTok의 사용자 데이터가 ByteDance의 데이터와는 별도로 저장되며 앱 외부의 알고리즘이나 기타 도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 (3) Apple

- ▶ Apple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iCloud의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국유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저장하기로 결정
  - Apple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중국 내 iCloud 관리를 중국 구이저우(貴州)성의 GCBD(Guizhou-Cloud Big Data Industry)에 위탁
  - Apple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으나, 모든 중국인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
  - 중국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는 Apple 계정을 만들 때 중국을 주요 국가로 선택한 중국 본토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홍콩, 마카오, 대만의 경우는 제외
  - 그러나 Apple의 데이터 이전에 따라 중국 정부는 iCloud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훨씬 더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 정부가 감찰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중국 정부 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Apple의 현지 파트너에게 사용자 데이터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파트너들은 해당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 ▶ Apple은 2019년 8월 iCloud의 불투명한 데이터 저장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도 피소6

<sup>5</sup>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byteclance/byteclance-ceo-urges-tiktok-diversification-as-u-s-pressure-mounts-internal-note-idUSKBNTXS14Z

<sup>6</sup> https://www.zdnet.com/article/apple-sued-for-not-disclosing-that-icloud-storage-relies-on-aws-azure-google/



- 미 플로리다 주민 Andrea M. Williams와 캘리포니아 주민 James Stewart는 Apple이 iCloud의 동작방식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내 모든 iCloud 사용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신청
- 원고 측에 따르면, iCloud에 저장되는 사용자 데이터는 Apple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제3자 업체의 스토리지에 저장될 수 있으나 Apple은 이 같은 사실을 약관에 밝히지 않고 'iOS 보안 가이드'를 통해서만 설명
- iCloud의 사용자 데이터는 제3자 스토리지에 저장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처리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내용
- 특히 제3자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가 해당 제3자에 의해 손상, 분실, 도난 또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열람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 제기

#### 4. 시사점

- ▶ 이번에 발의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법(National Security ad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
  - Hawley 상원의원은 그동안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데이터의 이동성(portability)을 강화할 것을 주장 △Amazon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한 강화 및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함
  - Hawley 상원의원은 이전에도 기술기업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법률로 구체화된 경우는 없음
- ▶ Hawley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자국 시민들의 민감한 데이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7
  - 이러한 행보는 중국을 비롯한 소위 적대국들이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동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러한 우려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
  - 그러나 중국내 법규 준수를 위해 중국 현지에 데이터를 저장해야하는 기술기업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해야 할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제기<sup>8</sup>

 $<sup>7\ \ \</sup>underline{\text{https://www.hawley.senate.gov/senator-hawley-introduces-bill-address-national-security-concerns-raised-big-techs-partnerships}$ 

<sup>8</sup> https://www.engadget.com/2019/11/18/national-security-personal-data-protection-act/



#### Reference

- 1. CNBC, TikTok national security inquiry is the latest US show of force on Chinese access to American data, 2019.11.4.
- 2. CNBC, TikTok pivots to new countries as US scrutiny increases, 2019.11.18.
- 3. The Hill, GOP senator introduces bill to limit flow of US data to China, 2019.11.18.
- 4. Reuters, ByteDance CEO urges TikTok diversification as U.S. pressure mounts: internal note, 2019.11.18.
- 5. Reuters, Google, Apple asked if apps like TikTok must disclose foreign ties, 2019.12.14.
- 6. Reuters, TikTok accused in California lawsuit of sending user data to China, 2019.12.3.
- 7. Engadget, Senate bill would block US companies from storing data in China, 2019.11.18
- 8. National 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발행 일 2019년 12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301-2) Tel 061-820-1946

-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